

BK21 참여대학원생 안내 사항

- 목적: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장학금 반납 발생을 줄이고자 함

1)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

구분	자격 기준	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	
		내용	조치 사항
1) 소속	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신청학과(부) 소속 지도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휴학생 :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◦ 제적생 :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◦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◦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매년 4/1, 10/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(연구생 등록 포함)해야 함 ◦ 사업 중간에 휴학, 제적되는 경우,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,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
2) 연한	입학 후 석사 2년, 입학 후 박사 4년,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.박사통합과정 재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석사 : 입학 후 2년이상, ◦ 박사 : 입학 후 4년이상, ◦ 통합 : 입학 후 6년이상 ※ 단,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◦ 매년 4/1, 10/1 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
3) 전일제	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.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◦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(다만, 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,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

※ **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,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.**

(참고) 4단계 BK21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

구분	비전일제 기준	조치사항
자격증/명의대여	매년 4/1, 10/1 기준 자격증/명의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자격증/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◦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/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/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
고등교육법상(행정) 조교	매년 4/1, 10/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(행정)조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◦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 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
시간강사	매년 4/1, 10/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인 시간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◦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인 시간강사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
타 프로젝트 참여	교육연구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,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

2) 연구장학금 반납 및 미지원 사례

1학기 장학금	2학기 장학금
당해연도 3월부터 8월까지	당해연도 9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

가. 학기 중 조기취업으로 비전일제가 된 경우

- 1학기 : 7월에 취업되어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- 2학기 : 1월에 취업되어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
나. 학기 중에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

- 4대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
다.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하여야 하나 전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

-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
라. 학기 중에 전문연구요원 훈련을 간 경우

- 전문연구요원 훈련기간(4주)은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
마. 연수기간 30일을 초과한 경우

-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
바. 4단계 BK21 사업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

-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(예: 글로벌박사양성사업,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등)

3)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 확인

- 2월 말, 참여종료 시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요건 검증을 위해 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” 제출해야 함